

1부 총론

반론권과 언론중재제도가 본격 운용된 지 20여 년이 지났다. 제5공화국 헌법과 더불어 1980년 제정된 언론기본법은 그 때까지 생소하기 그지없는 반론권을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이름으로 도입했다. 시행초기, 언론계 일부에서는 반론권 제도와 이를 운용하는 위원회에 대한 경계의 시선을 거두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반론권 제도의 순기능과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결과, 1987년 언론기본법이 폐지된 이후에도 반론권과 언론중재제도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기간행물법’)에 그대로 존속되었다.

그 후에도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의혹의 시선이 일부 남아 있었지만 언론매체의 편집권과 반론권간의 갈등이 표면적으로 심각하게 발생한 일이 별로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회가 이 사회 그리고 이 시대의 요구에 비교적 원만하게 대응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위원회가 언론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을 조화하는 중심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에 충실한 결과, 이제는 위원회의 존재에 대해 언론계가 더 이상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정도로 굳건히 자리잡았다고 자평할 수 있겠다.

위원회가 지난 수년간 추진하여 온 언론피해구제 관련 단일법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 2005년 제정·공포되었다.

언론중재법은 인터넷신문을 새롭게 조정·중재대상에 포함하였고, 정정 및 반론보도 외에 손해배상청구도 위원회가 다루게 하는 등 종합적인 언론

피해구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종합적인 피해구제기구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기존의 조정제도 외에 중재제도도 새로 도입되었다. 중재는 양 당사자가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라 언론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신청기한도 종전의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 보도가 있는 후 6월 이내에서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 보도가 있는 후 6월 이내”로 연장되었고, 신청방법도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이나 전자우편으로도 가능하게 되는 등 언론피해자의 권리구제의 폭이 넓혀졌다.

위원회는 언론중재법의 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시정권고소위원회규칙, 언론조정중재규칙, 조정중재사무처리규칙 등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고, 손해배상액의 산정 지원 및 사실관계 파악, 증거조사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기 위해 조정2팀을 신설하는 등 사무처 직제를 2본부 1센터 9팀으로 개편하였다.

또한 인터넷신문의 조정·중재를 위하여 인터넷신문 전용 심리실을 갖추는 등 새 법의 시행으로 변화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무여건을 개선하고 인적자원 충원을 통한 물적·인적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인터넷신문 전용 심리실

아울러 위원회는 달라진 법령에 따른 제도 운용에 대처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언론중재법의 시행으로 달라진 언론피해구제절차 및 언론소송절차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돕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총 10회에 걸쳐 사내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 새로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였다.

2005년도 한 해 동안 부정확하고 왜곡된 언론보도로 인한 심적·물적 피해를 호소하며 예년보다 많은 국민들이 위원회를 찾았다. 2002년 이후 조정신청사건의 증가 추세가 계속 이어져 2005년도에도 전년 보다 16.3% 늘어난 883건의 사건을 접수·처리하였다. 이는 국민의 인격권에 대한 인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보인다. 또한 법적 절차와 관련, 반론보도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반드시 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한 조항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조정신청이 증가한 것은 인터넷신문의 조정·중재대상 포함 및 손해배상청구권 도입 등을 가져온 언론중재법의 시행 효과라 판단된다.

언론중재법은 시정권고 기능도 한층 강화하였다. 위원회는 지난 20여 년간 정기간행물의 침해 사항을 자체 심의하여 그 시정을 권고하여 국민의 인격권 보호에 기여해 왔다. 언론중재법은 개인의 법익 침해 사항 뿐만 아니라 국가적·사회적 법익에 대한 침해사항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아닌 자도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정권고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시정권고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당사자 및 제3자 시정권고 신청 조항이 신설된 데 대하여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이익집단의 시정권고 신청 남발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었고 관련 조항의 위헌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2005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제3자 시정권고 신청사건은 총 17건에 지나지 않으며

대부분 개인이 신청한 것으로 드러나 시민단체 등이 언론보도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총 548개 매체를 자체 심의하여 이 중 275건의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고, 피해자 및 제3자가 신청심의 한 17건의 보도 내용에 대해 심의하여 3건을 시정권고 하는 등 모두 278건의 법익 침해 보도에 대해 언론사에 시정권고했다. 범죄사건의 피의자, 피고인의 신원을 공개하거나 자살사건과 관련하여 자살자의 신원을 공개하거나 자살방법을 상세히 묘사한 보도 등에 대한 시정권고가가 62.2%나 차지했다. 특히 자살사건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가 전년도에 비해 4배나 증가하여 주목된다. 위원회는 이 같은 무분별하고 선정적으로 흐르고 있는 자살관련 보도 행태를 주시하고 지속적으로 시정을 권고하여 망자와 유가족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의 계기를 마련해 나갈 것이다.

언론보도와 관련 불만을 하소연하거나 피해구제 방법을 문의하는 많은 이들이 위원회 상담 창구를 이용하였다. 위원회가 상근 변호사와 전문 상담원을 두고 언론피해구제방법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상담을 하기 시작한 2004년 4월 1일 이후로 위원회 상담창구 이용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전에도 언론피해구제와 관련한 문의에 조언을 해 왔으나 위원회의 주된 기능인 조정절차에 한정하여 진행되어 오던 것을 언론피해구제와 관련 제반 법률절차를 보다 깊이 있고 상세하게 안내하기 위해 별도의 상담부서를 두게 된 것이다. 아직까지 법률서비스의 문턱이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이에 접근하기 어려운 일반 국민들로서는 보다 질 높은 법률상담을 위원회를 통해 제공받게 되었다.

2005년 한 해 동안 위원회는 상담신청인의 방문 및 전화 그리고 위원회 홈페이지 Q&A, 온라인실시간 상담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총 2,353건의 상담

을 하였다. 이는 월평균 200여 건에 달하는 수치로 위원회가 언론보도로 피해를 호소하는 많은 이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창구로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된다.

위원회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위원회의 역할 및 언론중재법 내용을 바르게 알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언론사로 하여금 보도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언론사, 대학교, 공·사기업, 민간단체 등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5년도에는 총 68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언론사의 요청으로 기자·PD 등 언론현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언론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을 행한 비율이 전체 교육 중 66.2%에 달하여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사의 자사 기자 교육으로 위원회의 언론피해 예방교육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것이다. 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이 언론분쟁의 사후 해결뿐만 아니라 언론보도의 관행을 개선하여 부주의한 보도가 야기할 수 있는 언론피해사례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보다 바람직한 언론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일익을 담당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위원회 TV광고

또한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그 이해를 돕기 위한 교재도 개발하여 각급 단체에 배포함은 물론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한편 인격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인격권 침해 행위에 대해 효

과적으로 대처하게 하며, 나아가 언론분쟁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기 위해 위원회는 다양한 계층에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하는 데도 힘을 쏟았다.

언론중재법의 시행으로 달라진 제도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TV 광고물을 비롯한 각종 매체 광고물을 제작, 집행하였다. 방송매체와 인쇄매체는 물론 인터넷 배너 광고와 전광판, 지하철 광고 등에 이르기까지 홍보매체를 다양화하였고 위원회 홈페이지도 전면 개편하여 접근성도 높여 가는 등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매체광고를 집행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각장애인용 음성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사회적 소수계층에 대해서도 위원회를 적극 알렸다.

언론피해구제제도의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위원회는 직권중재결정 제도를 도입한 정기간행물법의 개정(1995년 12월 30일) 직후부터 민법, 형법, 정기간행물법, 방송법 등에 분산되어 있던 언론피해구제 관련 법령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고, 제도 운용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하여 1998년 가칭 '언론피해구제법'안을 성안하였다. 이를 위원회는 회지 <언론중재>에 소개하고, 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통해 법조계,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계속 펼쳐 나갔다. 언론피해구제제도에 관한 단일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고 공감대 확산을 위해 각종 발간물과 학술행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단일법에 대한 여론을 수렴해 왔다. 언론중재법의 제정은 이러한 위원회의 적극적인 논의 추진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것이다.

위원회의 조사·연구사업을 위원회 기능과 언론조정 및 중재제도에 국한하여 진행해 온 것은 아니다.

언론학과 법학의 학제간 논의가 부족한 학문풍토와 언론법제 분야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윤리와 언론관계법의 현안, 언론소송의 경향 및 판결 분석, 외국의 언론피해구제제도 사례 분석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연구 활성을 촉진함으로써 언론법제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이끌어내고 관련 전문가를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언론윤리와 법제에 관한 연구들이 제도 개선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언론법제 관련 연구논문과 언론현안을 분석한 문헌을 주로 게재하고 있는 <언론중재>는 정평 있는 언론법제 분야 학술지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다. 또한 언론관련 판결만을 수집, 정리하여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국내 유일의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조정사례를 분석, 소개하는 <연차보고서> 등은 언론법제와 관련한 연구에 있어 필수적인 문헌으로 평가되고 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신뢰받는 위원회로 거듭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